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의 예외 마련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86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05386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의 예외 마련 (안 제35조제1항)	2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538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8.
3. 회 부 일 : 2024.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는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원인자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인접지역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다리 등 통로를 신설한 후 그 통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타공사 시행자의 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의 예외 마련 (안 제35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 필요 시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해당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 ----- ----- ----- ----- ----- ----- -----

현행	개정안
다. <단서 신설>	---. 다만,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 이후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불편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현행법 제91조제1항1)에 규정된 원인자 부담 원칙에

1)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근거하여 해당 사항을 요구하는 지자체 또는 집단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예컨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건설로 인접지역이 분리되어 고속국도 건설 시 통로암거²⁾가 만들어졌는데, 근처 지역개발 공사, 교통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통로암거를 확대하려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통로암거 확대 공사 비용을 이를 요구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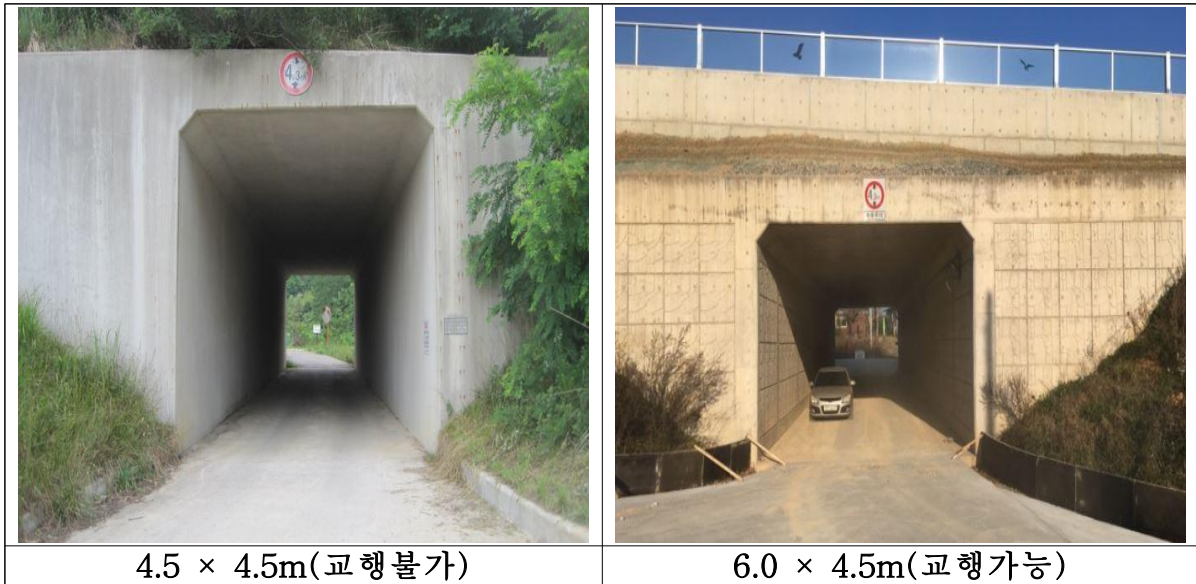
그런데,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통로암거만 보더라도 최근 10년 간 한국도로공사에 통로암거 확장 민원이 34건 접수되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토교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속도로 통로암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통로암거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음.

【 통로암거 관련 2023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中 】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중부내륙지선 통로암거를 포함하여 고속도로 통로암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통로암거 개선을 추진한다.

2) 통로암거(通路暗渠)란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을 뜻함. (국립국어원)

【 통로암거 사진 】



※ 자료 : 한국도로공사

또한, 이와 같은 민간 및 지자체의 요청은 궁극적으로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고속도로 건설 등)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 민간 및 지자체 등 요구자가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³⁾

개정안은 이처럼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후 민간 및 지자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같은 비용부담의 일차적 원인이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한 것인 점, 국민 불편

3) 정부는 부담금 정비의 일환으로 현행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폐지를 추진 중이며 관련 법률안(정부 제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28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감소를 위한 개선조치임에도 민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면서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타공사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행위·타공사의 개념,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표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현행 제35조제1항의 타공사, 타행위는 그로 인해 도로공사가 필요해지는 상황을 유발함에 따라 해당 타공사, 타행위를 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개념으로, 도로공사를 유발하는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모든 공사 및 행위⁴⁾를 의미함.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시행 완료된 도로공사로 인해 초래되는 타공사 및 타행위 전체에 대하여 그 시행자의 비용을 도로관리청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가 모호하고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보임.

4) 예컨대 타공사는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공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 등이 해당되며, 타행위는 차량사고로 도로가 파손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국토교통부·한국법제연구원, 『도로법 해설』, 2022. 2., p.179)

따라서 제안이유에서 제시된 통로암거의 사례와 같이 완료된 도로공사로 인해 직접 유발되는 타공사 및 타행위가 지역공동체 보전, 교통혼잡의 해소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인 유형과 지원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둘째, 개정안은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를 삭제하는 정부 제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타공사, 타행위로 인한 비용부담 조항의 경우 현행법 제35조제1항과 제91조제1항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제출안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 제91조제1항도 연계하여 정비할 것임.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도로공사와 타공사(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즉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주변의 특정 타공사(인근 산업단지 공사 등) 없이 교통량·화물차량이 증가하여 통로암거 확장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기획재정부 의견

개정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반되며 최초 고속도로 건설 시 하부이동을 위한 통로암거 건설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 중인데, 이후 통로암거 확장 소요는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교통량 변화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5